

1. 개정이유

제4차 산업 대비 및 스마트항만 실현을 지원하고 도심과 항만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지원시설 범위에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른 데이터센터와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버티포트를 포함하며, 그 밖에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항만지원시설의 확대(안 제2조제10호·제11호 신설)

항만기능을 지원하는 항만지원시설에 데이터센터와 버티포트를 추가하여 신설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항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

11.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
따른 버티포트

별지 제19호서식 신청인 중 “사업자등록증”을 “사업자등록증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항만지원시설) 「항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5호다목8)에서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	제2조(항만지원시설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0.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</u>
<u><신 설></u>	<u>11. 「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버티포트</u>

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60일
신청인	기관(단체)명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
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
	사무소 소재지	

「항만법 시행령」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의 지정(변경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법인의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사업계획서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 리 절 차

